

“함께 하는 건설, 따뜻한 세상”



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

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

제목 2023회계연도 회비(2024년 2월 실적신고서 납부) 안내

1. 건협 서울시회-2404호('23.11.06)와 관련입니다.
2. 2023회계연도 제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간 중(2024.2.1.~2.15) 귀 사가 납부 하여야 할 회비(기본회비, 통상회비, 자기공사평가수수료)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□ 부과내역 (근거 : 정관 제43조 제3항, 제4항)

○ 실적신고시스템 입력시 회비부과내역(미수회비 포함) 조회 가능

가. 회 비 : $180\text{만원} + ('23\text{년도 국내공사 기성액} * 0.09/1,000)$

* 우리협회에 신고하는 국내공사 기성액(종합·전문공사) : 붙임 참고

구 분	2023회계 부과액(율)	비 고
① 기본회비	150만원 (업체당)	전년동일
② 통상회비	30만원(본회 최소회비) + '23년도 국내공사 기성액* × 0.09/1,000	(본회) 0.07 전년동일
		(시회) 0.02 전년동일

※ 총 납부 회비 : ① + ② ± 전년도 실적감액으로 발생한 반환회비 및 실적확정 후 누락된 유지보수공사 실적 회비

※ 서울시회 홈페이지(www.scak.or.kr) 좌측 하단 협회 회비 계산식 참조

※ 단, 2023회계연도(2023.3.1~2024.2.28) 기간 중에 회원가입한 회원사의 ①기본회비는 가입일 기준으로 월할계산됨.

나. 자기공사평가 수수료(해당업체)

○ 자기공사평가 신청시 평가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자기공사평가수수료 요율표 - 실적신고 교재 : 72페이지 참조

□ 납부기간 : 2024. 2. 1(목) ~ 2. 15(목)

※ 납부기간 경과시(2.16)부터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(협회 회비부과 징수규정 제10조)

□ 납부방법

- ① 온라인 결제 : 실적신고 프로그램 결제서비스(이니시스)로 결제
 - ※ 회비부과 전액(미납금액 포함) 결제시 서류출력 가능
 - ※ 내용확정 → 회비납부(이니시스) 후 기성액 등 수정 필요시 사무처로 문의 요망
 - ⇒ 기성액 등 수정시 기 납부(이니시스) 회비는 자동 환불(1~3일 소요)됨에 따라 재납부 요망
- ② 통장입금 : '업체명'으로 입금
 - 계 좌 : KEB하나은행 222-890010-20504 (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)
- ③ 현금납부 : 실적신고 기간 내 납부처(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)에서 현금납부 가능
 - ② 통장 또는 ③ 현금으로 납부시, 사무처 확인 후 실적신고시스템에서 서류출력 가능 (② 통장입금의 경우, 사무처로 유선 통보 요망)
 - ☞ ① 온라인 결제시 타 결제방식 (② 통장입금, ③ 현금납부)보다 대기시간이 단축되며 신고 절차가 간편

□ 납부 증빙 서류 안내

- 회 비 : 실적신고기한(2.1~2.15) 중 실적신고시스템에서 입금표 출력 가능
- 자기공사 :결제 익일 작성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전송

※ 회비 문의처 :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. ☎ 02-3218-9107

붙 임 :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(종합·전문) 1부. 끝.

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



수신자

과장 김선미 실장 대우 전기훈 사무처장 전종구

협조자

시행 서울특별시회-135 (2024.01.17.) 접수

우 06050 서울 강남구 연주로 711 건설회관 6층 / <http://www.scak.or.kr/>

전화 02-3218-9107 /전송 02-6234-0919 /ksm@cak.or.kr / 공개